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1 【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2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19-8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3 【발명의 국문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The method of forming the protective film
on the metallic decorative panel for building

【발명자】

【성명】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3-000019-8

○○전자(X)

자연인만 기재 가능(법인 불가!)

【출원언어】 ☒ 국어 ☐ 영어

4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에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유예희망시점】 ☐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1

특허출원 :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고자 신규로 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고자 신규로 출원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3

【발명의 국문명칭】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기재**【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 기재**【발명자】** 특허 발명자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

4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유예신청** : 심사청구 시 심사유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심사유예기간** :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실용신안은 **12개월까지**)* **심사청구납부유예** : 심사유예신청 시에만 가능 **조기공개신청** :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 정해진 서식 또는 기재요건을 따르지
않는 명세서를 제출

※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내 '임시명세서 보정'으로 명세서 형식을 갖춰 보정서 제출
 해야 함 (**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취하 간주**)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명세서

명세서

【발명의 설명】

1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2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도 2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서열목록】)

3

【청구범위】

【청구항 1】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기술분야】**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분야**【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택기술사항)

【선행기술문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문헌 정보**2 【발명의 내용】****【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제의 해결 수단】**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발명의 효과】**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 각각의 도면에 대한 설명**【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선택기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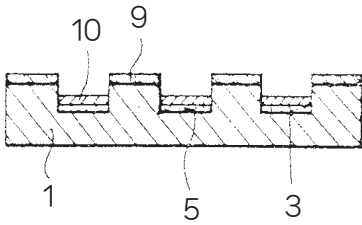
【실시예】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가 필요한 경우**【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등록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부호의 설명】** 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들에 대한 설명**【수탁번호】** 명세서에 적혀 있는 미생물들의 수탁번호들을 별도로 정리하려는 경우**【서열목록 자유텍스트】** 명세서에 첨부된 서열목록에 적혀 있는 자유텍스트**【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3 【청구범위】** 특허(실용신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으로 기재

-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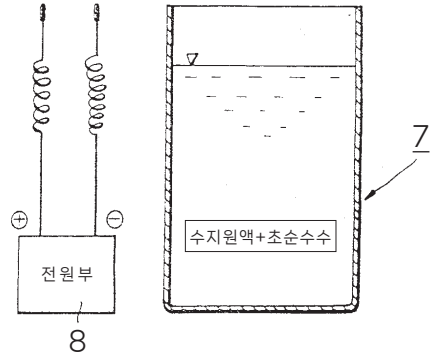
도면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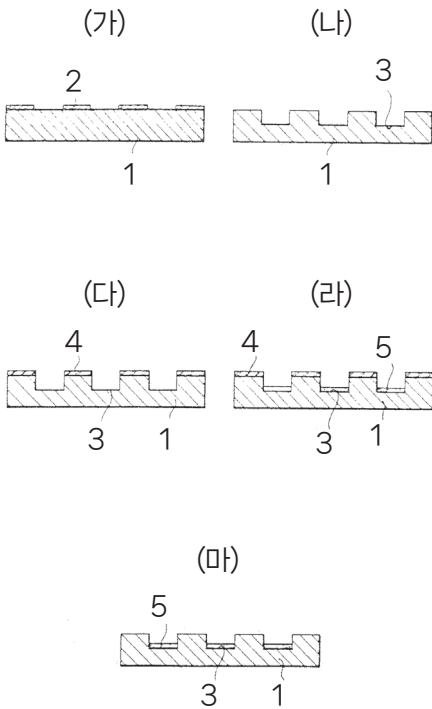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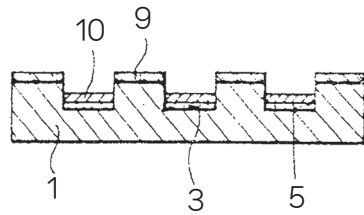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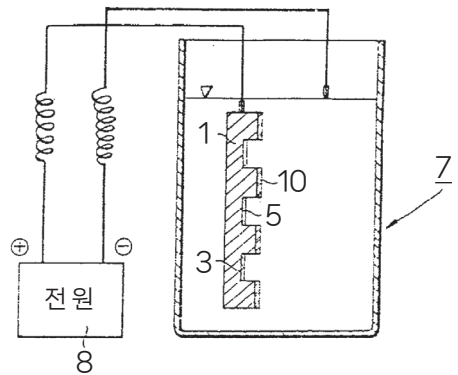
【도 3】



【도 4】



【도 5】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보다 크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도면】

- 1** 특허출원의 대상이 기계, 기구, 장치와 같은 물건에 대한 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
- 2**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므로 출원서에 반드시 도면을 첨부
- 3**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음
- 4**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의 내용 중에 기재할 수 없으며, 명세서에 기재
- 5** ‘도면’ 내용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도면’ 내용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도시

요약서**요약서**

【요약】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다음 내용을 기재

- (1) 기술분야
- (2) 해결하려는 과제
- (3) 과제의 해결 수단
- (4) 효과 등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보정서

- 1 【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정정명세서 등 보정 ☐ 취소신청서 등 보정 ☐ 취소신청서 등 보충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2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1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09876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9-5-20**-1234567-89

4 【보정(보충)할 서류】 명세서 등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별지와 같음

【보정(보충)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보충)내용】 별지와 같음

【기타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보정료】

【첨부서류】 명세서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 1 명세서 등 보정 :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 3 **【사건의 표시】** 보정하고자하는 해당 출원의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가.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23456789	* 통지서 좌측 상단 확인
발송일자 : 20**.03.21.	
제출기일 : 20**.05.21.	

나.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12345678	* 거절결정서 좌측 상단 확인
발송일자 : 20**.10.31.	

4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명세서 보정 시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보정내용을 별지에 적어 첨부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거절결정 이후 명세서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 재심사청구에 ☒ 표시하고, 보정료 및 재심사청구료를 함께 납부

지정기간단축신청

명세서 보정과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 지정기간단축신청에 ☒ 표시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 1
- 【출원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분할출원
 ☐ 상표등록변경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 【권리구분】 ☒ 상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업무표장

- 2
-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11-1
-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3
-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류】 제25류
 【지정상품】 스커트, 넥타이, 양말

【상표유형】 ☐ 일반상표 ☐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홀로그램상표
 ☐ 동작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상표의 시각적 표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첨부서류】 상표견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 1 **상표등록출원** :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
-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 3 **【상품류】**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1개류를 기재
(1류 당 10개 상품 기본, 10개 초과 시 초과 1상품마다 2,000원의 추가수수료 부과)

【상표견본】

※ 견본을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종이(A4 용지)에 표시하십시오.

몽블랑

※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 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 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cm X 세로 8cm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보정(보완)서

1

【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2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23456-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40-20**-009876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9-5-20**-1234567-89

【보정(보완, 보충, 제출)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4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등록대상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25류

【지정상품] 의류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25류

【지정상품] 의류, 속옷, 바지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추가등록대상’ (X)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경우만 기재

이전에 오기재한 사항(보정 대상)을 그대로 기재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1 출원서 등 보정 :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대리인】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기재,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3 【사건의 표시】 보정하고자하는 해당 출원의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23456789

발송일자 : 20**.03.21.

제출기일 : 20**.05.21.

* 통지서 좌측 상단 확인

-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12345678

발송일자 : 20**.10.31.

* 거절결정서 좌측 상단 확인

4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방법】 “정정”, “추가”, “삭제”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대상인 기존의 상품류와 지정상품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새롭게 보정하고자 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거절결정 이후 출원서 또는 견본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 재심사청구에 ☒ 표시하고, 별도 보정료 필요없이 재심사청구료만 납부

 **지정기간단축신청**

출원서 또는 견본 보정과 함께 지정기간의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 지정기간단축신청에 ☒ 표시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1 【출원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2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123-0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 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3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디자인의 수)】
 【물품류】 제7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제1류(X)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는 상단의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출원' 선택

4 【창작자】
 【성명】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123-0

○○전자(X)
자연인만 기재 가능(법인 불가!)

5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수수료】

【첨부서류】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대리인]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기재,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3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기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기재.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4 [창작자] 디자인의 창작자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

창작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란을 만들어 기재)

5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서면 수수료 ₩24,000)

 디자인비밀보장청구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서면 수수료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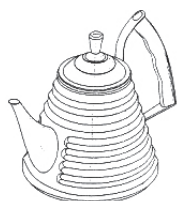
디자인 도면

1 【물품류】 제7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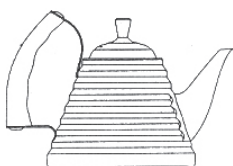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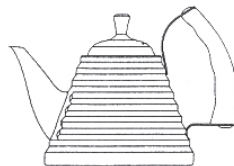
1. 재질은 금속재 및 플라스틱재 임
2. 주전자 전면에 삼각돌조를 형성한 것을 요지로 함
3. 도면 1은 「주전자」의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도면 2는 「주전자」의 정면도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3은 「주전자」의 배면도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4는 「주전자」의 우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5는 「주전자」의 좌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6은 「주전자」의 평면도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7은 「주전자」의 저면도를 표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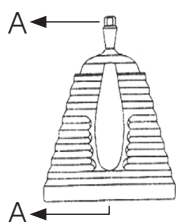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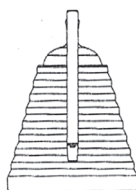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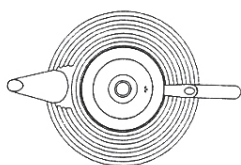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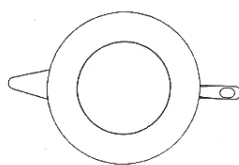
【도 4】



【도 5】



【도 6】



【도 7】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보다 크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기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기재

【디자인의 설명】 물품, 도면, 디자인,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대한 설명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 도면의 기재 순서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 **【도면 2】**, **【도면 3】**... 순으로 기재

도면을 같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 1)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cm × 세로 15cm 이하,
최소 가로 7cm × 세로 10cm 이상의 크기
- 2)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
- 3)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 · 변질되지 않을 것
- 4)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 5)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6)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첨부할 것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보정(절차보완)서

1 【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2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4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0098765

【디자인의 일련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9-5-20**-1234567-89

4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디자인 도면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별지와 같음

【보정(보완, 보충)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보완, 보충)내용】 별지와 같음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도면(사진·견본) 1통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1 도면 등 보정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3 [사건의 표시] 보정하고자 하는 출원의 출원번호 기재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23456789

발송일자 : 20**.03.21.

제출기일 : 20**.05.21.

* 통지서 좌측 상단 확인

-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12345678

발송일자 : 20**.10.31.

* 거절결정서 좌측 상단 확인

4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 도면 보정 시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보정항목]** 모두 “별지와 같음” 이라고 적고, 보정하는 디자인 도면을 별지로 첨부

-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거절결정 이후 도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 재심사청구에 ☒ 표시하고, 별도 보정료 필요없이 재심사 청구료만 납부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1 【구 분】 ☒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2 【제출인】

【성명(명칭)】 (주)OO전자

【특허고객번호】 1-20**-123456-1

【사건과의 관계】 양수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098765

【발명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휴대폰 배터리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40-1

【변경후】

【성명】 (주)OO전자

【특허고객번호】 1-20**-000012-3

【변경원인】 전부 양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주)OO전자 (서명인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

【수수료】

4 【첨부서류】 양도증 및 계약서, 기타 증명서류 등

1 출원인변경 : 출원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출원지분변경 : 기등록된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변경의 경우 : “변경후 출원인(양수인)”으로, 출원인지분 변경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와 함께 명칭,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기재

[변경내용]

- 출원인변경

출원인 김출원 → 출원인 (주)○○전자

- 출원인 지분변경

출원인 김출원(1/2), (주)○○전자(1/2) → 출원인 김출원(1/3), (주)○○전자(2/3)

[변경원인] 출원인변경을 하는 이유 기재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등)

4 [첨부서류]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 또는 양도증, 지분약정서, 지분포기서 등

-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와 양도증서 상 기재된 **[변경원인]**이 일치해야 함

- 양도증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장**이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장**과 동일해야 함

* 불일치할 경우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제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양도증서 (별지)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871118

[발명의 명칭] 휴대폰 배터리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

[양도일자] 20**.5.20.

[양도인]

[성명] 김출원

[주민등록번호] 891111-1111111

[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

[양수인]

[성명] (주)○○전자

[법인등록번호] 123459-7890000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로 ○번길

기간 연장 · 기간 단축신청서

기간 연장 · 기간 단축신청서

1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2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4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출원번호】 10-20**-0098765

(【디자인의 일련번호】)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제출할 서류】) 의견제출통지서

(【접수(발송)번호】) 9-5-20**-1234567-89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4 (【연장신청서 제출 횟수】) 1회

(【연장희망기간】) 1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또는 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1 법정기간 연장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또는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 지식재산처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기간 단축 :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사건과의 관계]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3 [출원번호] 기간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의 출원번호 기재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제출할 서류] 불복심판청구기간 혹은 보정기간 내에 제출할 서류명

[접수(발송)번호] 연장 신청할 기간이 기재된 통지서의 발송번호

※ 제출기일 경과 후 기간연장신청서
제출 시 반려대상
제출기간 내에 기간연장신청서
제출해야 기간연장 가능

발송번호 : 9-5-20**-023456789
발송일자 : 20**.03.21.
제출기일 : 20**.05.21.

* 통지서 좌측 상단 확인

4 [연장신청서 제출 횟수] 현재 기간신청서를 몇번째로 제출하는지 기재

[연장희망기간] 해당 신청서로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기간을 기재

지정기간 연장 신청 가능 횟수

-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 초과할 수 없음
- 특허(실용신안)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4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 초과기간 인정에 따른 소명서 제출(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을 하여야 기간이 연장됨)

법정기간 연장 신청가능 횟수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의견서

의견서

1

-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 기타의견

2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4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09876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9-5-20**-1234567-89

4

【의견(답변, 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첨부서류】 의견내용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거나, 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사건과의 관계】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3 【사건의 표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출원의 출원번호 기재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원인이 된 거절이유통지서의 발송번호

발송번호 : 9-5-20**-023456789

발송일자 : 20**.03.21.

제출기일 : 20**.05.21.

* 통지서 좌측 상단 확인

4 【의견(답변, 소명)내용】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 상표의 경우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경과시 절차
계속신청서(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와 함께 의견서 제출 가능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1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2 【신청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00041-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자연인 : 4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 법인 : 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10-20**-0098765

【감면(면제)사유】 65세 이상인 사람 (85%)

4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김출원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955.01.11.

【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123-456-78900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정보 상의 인장이나 서명

【첨부서류】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1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

출원과정 등에서 감면사유를 적지 않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출원료 등을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 【성명(명칭)】 특허고객정보 상의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기재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 기재

【사건과의 관계】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3 【사건의 표시】 감면대상인 해당 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

【감면(면제)사유】 수수료 면제/감면 사유 기재

4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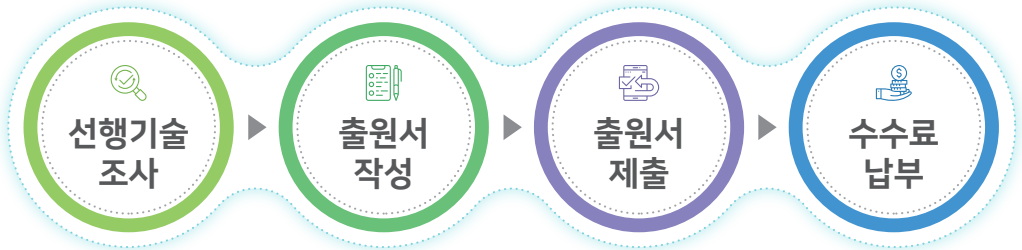
※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내용 안내(출원관련)

Q 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선행기술 조사** :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발명(고안)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 키프리스(www.kipris.or.kr)

- 방 문 : 지식재산처 도서관(☎ 042-481-5136), 정보공개 및 기록관(☎ 042-481-8568)

❖ **출원서 작성** :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작성

❖ **출원서 제출**

- 방문 접수 :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민원동 1층)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

- 우편 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장 (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 온라인 접수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S/W 설치하여 서식작성 후 전자 인증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다음 날까지 납부

- 직접 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입고지서로 납부

-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 온라인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를 통해 전자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우편 접수 :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

- 방문 접수 : 서류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온라인 접수 : 서류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 가능

❖ 지식재산처는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1544-808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를 감면받고 싶은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A 출원료 등의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율	감면대상	증명서류
100% 권리별 절차별 연간 5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 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없음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85% 권리별 연간 20건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없음
	65세 이상인 사람	없음
70% 권리별 연간 20건	개인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50%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없음
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Q 3 - 출원인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설정등록 전까지)인 것에 대한 명의변경을 의미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 1통 : 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양도에 의한 경우	온라인 : 건당 11,000원, 서면 : 건당 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온라인 : 건당 5,000원, 서면 : 건당 6,500원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온라인 : 건당 5,000원, 서면 : 건당 6,500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Q 4 - 출원인 정보(성명, 법인 명칭, 주소 등)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정보변경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 2008년 이전 등록된 건은 정보 변경 후 등록번호별로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와 정보 변경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면 일부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5 - 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보정서를, 완료된 후에는 정정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정등록(등록번호 부여) 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

- [보정 구분 : ☒ 출원서 등 보정] (발명자 항목을 정정·추가 선택하여 작성)

✦ 설정등록(등록번호 부여) 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정정발급 신청서

✦ 공통 구비서류

-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

*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오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명백한 오기재의 예시

-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성명이 개명을 통해 변경
- 동일한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중복 기재
-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외국인) 성명의 음역상 차이로 인한 타 출원과의 불일치
ex) Daniel : 다니엘, 대니얼

Q 6 - 연구개발(연구노트, 논문 등)은 했는데, 명세서를 제출 서식에 맞게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임시명세서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으며, 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기타사항]란의 "임시 명세서"를 ☒ 표시해야 합니다.

연구노트, 논문 초안, 발표자료, 기술서명서 등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별지 서식 기재방법에 따라,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기재하였으나, 청구범위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명세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구범위 유예 대상)

Q 7 - 사업 준비 등을 위해 심사를 늦추고 싶은데, 심사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유예를 하려는 시점에 따라 심사시기 유예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 ❖ **출원 전** : 특허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출 시
 -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체크 및 유예희망시점 작성
- ❖ **심사청구 전**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서식) 제출 시
 - ☒ 심사유예신청 체크 및 유예희망시점 작성
- ❖ **심사청구 후** :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제출
 - * 심사유예희망시점 : 출원일부터 5년 이내로 한정

Q 8 -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기간 내 보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제수단이 있나요?

A 보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1회당 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총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수수료
1개월 이하	20,0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30,0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60,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120,000원

※ (예시) 출원인이 1회에 2개월의 기간연장 일괄신청 시, 납부할 기간연장신청료는 총 50,000원[(1개월차) 20,000원 + (2개월차) 30,000원]이며, 이후 추가로 1개월(3개월차) 연장 신청 시 60,000원 납부

Q 9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구제수단이 있나요?

A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분할출원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 ❖ **재심사의 청구 (특허법 제67조의2)** : 특허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 재심사를 청구할 때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가능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10 - 출원 취하(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취하(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취하서는 출원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출원인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원인 중 일부가 제출한 취하서는 반려됩니다.

취하서는 거절결정(재심사기간 이내)이나 등록결정 이후(설정등록 이전)에도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이면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권리 유형별 출원 서류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 도면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공통서류

-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기간 연장·기간 단축신청서
- 의견서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안내(출원관련)



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문의처 | 대표번호(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지식재산출원과 : 042-481-5541

www.moip.go.kr